

★ 발의안 제35호에 대한 찬성론 ★

발의안 제35호에 찬성 표를 던져 인신매매를 뿌리 뽑읍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힘없는 여성들과 아이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인신매매법들의 재정적 이득을 위해 강제로 성매매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어린 소녀들로 12살짜리 소녀들도 있습니다.
인신매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범죄 사업 중 하나이며, 바로 이곳 캘리포니아주의 길거리나 온라인 상에서도 어린 소녀들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한 전국적 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률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F"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발의안 제35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발의안 제35호에 찬성하면

- 인신매매법에 대한 징역 형량을 늘려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유죄판결을 받은 인신매매법들을 반드시 성범죄자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범죄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모든 성범죄자들은 의무적으로 자신의 인터넷 계정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의 착취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유죄판결을 받은 인신매매법들에 대한 벌금량을 늘려 확보된 자금을 피해자 서비스 예산으로 사용함으로써 생존 피해자들이 삶을 되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35호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합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상당수는 힘없는 아동청소년들입니다.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성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합니다. FBI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등 캘리포니아주 도시 세 곳을 아동청소년 성매매 고밀도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때문에 발의안 제35호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을 착취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35호는 인신매매자들이 자신들의 끔찍한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성매매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노립니다. 돈을 벌고 나면 피해자들을 내다 버립니다. 발의안 제35호는 이러한 범죄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발의안 제35호를 통과시킴으로써 캘리포니아인들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성적 착취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 편에 설 것이라는 의지를 공포해야 합니다."

—Nancy O' Malley, Alameda County District Attorney & 전국 피해자 권리 옹호자

발의안 제35호는 온라인 상에서 시작되는 아동청소년 착취를 막습니다.

인터넷은 인신매매자들이 취약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통로입니다. 발의안 제35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자신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의무적으로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인신매매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최대 법집행기관이 제35호에 찬성 투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에 맞서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성매매자들을 처벌하고 성적 착취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발의안 제35호에 찬성 투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Ron Cottingham, 회장, Peace Officers Research Association of California, 공공 안전 담당자 64,000명의 대표

범죄 피해자들과 그 옹호자들도 발의안 제35호에 찬성 투표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발의안 제35호는 길거리 또는 온라인 상의 아동청소년 매매를 통해 이득을 보는 인신매매자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Marc Klaas, 1993년 납치-살해 당한 Polly Kalss의 아버지이자 범죄 피해자 권익 옹호자

"저는 14살 때 문제 가정을 뛰쳐나와 인신매매자의 손아귀에 잡혀들었습니다. 수년 동안 아직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와 착취를 당해야 했습니다. 인신매매 생존자로서, 캘리포니아 주민들께 성적 착취 반대를 행동으로 보여 주고 제35호에 찬성 투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Leah Albright-Byrd, 인신매매 생존자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합시다. 인신매매자들의 범죄를 막읍시다.

발의안 제35호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VoteYeson35.com

LEAH ALBRIGHT-BYRD

인신매매 생존자

MARC KLAAS, 회장

KlaasKids Foundation

SCOTT R. SEAMAN, 회장

캘리포니아 경찰서장 협회

★ 발의안 제35호 찬성론에 대한 반론 ★

이 법안은 인신매매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위협하는 법안입니다.

발의안 제35호가 통과될 경우, 성매매 종사자의 자녀, 부모, 배우자, 동거 파트너, 룸메이트, 건물주 등 성인들 사이에 정상적이며 상호 합의에 의한 성매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인신매매자로 기소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평생 동안 강제로 성범죄자로서 등록되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성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한다면 미국 내에서 복무하고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내 아들도 인신매매자로 낙인 찍혀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Maxine Doogan

진짜 인신매매법들을 막기 위해 성매매 업계와 협력하기 보다는 발의안 제35호를 후원하는 극좌파이며 성행위 반대 주의자인 페미니스트들과 극우파 종교 보수주의자들의 경우 유권자들이 "인신매매"라는 말을 들으면 그에 현혹되어 상호 합의에 의한 성인들 간의 매춘을 한층 더 범죄시 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에 대한 자신들의 반대 운동을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바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인신매매의 "고밀도 지역"이라는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다른 곳에서도 있었던 폭로 주장들과 의심이 들 정도로

유사합니다. http://www.oregonlive.com/portland/index.ssf/2011/01/portland_child_sex_trafficking.html

발의안 제35호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재정 위기를 겪고 있고, 수많은 도시들이 이미 파산 신청을 한 시점에서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부채를 새로 추가하려 합니다. 발의안 제35호의 선거 운동 기부금은 90% 이상을 한 사람의 부유한 기업 임원이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www.huffingtonpost.com/2012/07/07/californians-against-sexual-exploitation-act_n_1656311.html). 하지만 이 사람이 법안을 집행하는 데 드는 예산까지 제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신매매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리라는 것은 근거 없는 희망에 불과합니다. 재산 몰수가 "마약과의 전쟁" 비용을 충당하지 못했듯이, "성매매와의 전쟁" 비용도 절대 충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발의안 제35호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MANUAL JIMENEZ, CFO

Erotic Service Providers Legal,

Education, and Research Project, Inc.

NORMA JEAN ALMODOVAR

STARCHILD

★ 발의안 제35호에 대한 반대론 ★

발의안 제35호는 실제로 약속한 바에 그 결과가 미치지 못하며, 유권자들은 이에 반대해야 합니다.

법으로 금하는 것이 보호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발의안 제35호가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이 발의안의 찬성론자들에게 또 다시 백지 수표를 써 주는 꼴이 됩니다. 이 근사한적인 투표 법안은 넓은 범위의 매춘업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성매매자의 부모, 자녀, 룸메이트, 동거 파트너, 건물주까지도 모두 성범죄자라는 딱지가 붙게 됩니다. 이 발의안의 실질적인 목표는 몰수된 재산을 확보해 후원하는 법집행기관과 비영리 단체에 이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발의안 제35호는 감독이나 책임 소재를 따지는 장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마약 단속에서 볼 수 있는 부정부패 관행에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http://www.contracostatimes.com/news/ci_20549513/

[defendant-cnet-corruption-scandal-gets-federal-prison-sentence](http://www.contracostatimes.com/news/ci_20549513/)

발의안 제35호가 통과될 경우 이는 주 예산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아동청소년들을 구출한다는 구실 하에 수행되는 위장 단속 작전을 통해 성매매 행위를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성인들을 체포하고 이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재원에 의지하게 됩니다. <http://www.sfgate.com/default/article/Bay-Area-sweep-nets-child-prostitute-pimp-suspects-3661229.php>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 행위로 체포되는 십대 청소년 대부분은 포주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재원이 자동적으로 마련될 것이라는 생각은 근거가 없는 셈입니다. 사라진 소년들: 고정 관념을 타파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 <http://www.riverfronttimes.com/2011-11-03/news/commercial-sexual-exploitation-of-children-john-jay-college-ric-curtis-meredith-dank-underage-prostitution-sex-trafficking-minors/>

발의안 제35호는 "구출"이라는 핑계로 법률 상의 금지를 미성년자 체포 수단으로 이용하는 실패한 정책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UN 자문 그룹 소속 자문 위원 Cheryl Overs의 아동청소년의 상업적 성적 착취와의 싸움에 관한 견해 <http://www.plri.org/story/tackling-child-commercial-sexual-exploitation> 이미 실패한 정책을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http://www.traffickingpolicyresearchproject.org/>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주정부는 불확실하며 심지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 여러 조항들로 인해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정에서 이 법안을 변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음란물을 배포하려는 의도"를 포함한 "인신매매"에

대한 애매모호한 정의로 위험 가능성이 있고, 과도한 징역 형량과 벌금을 포함하는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도 위험 가능성이 있으며, 변호 재판에서 증거를 제시할 피의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 또한 위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은 주정부에 금액을 알 수 없는 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미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가석방 담당 부서에도 업무를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Jaycee Dugard 사건, 그리고 캘리포니아주가 폭력적인 성범죄자로부터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2천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법의 확대된 조항들을 집행하려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필요할 것입니다. <http://www.sfbg.com/politics/2012/06/16/bringing-heat>

이 잘못된 발의안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공포심을 부추겨 유권자들에게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벌금과 수수료를 놓고 도박을 하도록 만들어 원래부터 모자라는 주정부 재원이 기존의 사회 보장 서비스 개입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법은 이미 집행되고 있습니다. <http://blog.sfgate.com/incontracosta/2012/06/25/concord-police-assist-with-multi-agency-operation-targeting-child-prostitution/>

발의안 제35호의 근본 정책은 영향을 받는 대상 인구와 상관 없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찬성론자들은 상호 동의 하에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재정적인 이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매매 종사자들은 형사법으로 인해 강제로 일을 그만두게 되고 강제로 찬성론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매매 종사자들의 견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명확히 말씀 드립니다. 성매매의 범죄화는 착취를 허용하는 조건입니다. 이를 허용하는 대신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합니다.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져야 합니다.

발의안 제35호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MAXINE DOOGAN, 회장
Erotic Service Providers Legal,
Education, and Research Project, Inc.
MANUAL JIMENEZ, CFO
Erotic Service Providers Legal,
Education, and Research Project, Inc.

★ 발의안 제35호 반대론에 대한 반론 ★

"제가 처음 인신매매법에 대해 착취 당한 것은 겨우 10살 때였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착취를 당했고, 인신매매법은 계속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길거리와 온라인 상에서 인신매매 대상이 되고 있는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위해 나서 주십시오. 인신매매를 막을 수 있도록 발의안 제35호에 찬성 투표해 주십시오."

—Withelma Ortiz, 인신매매 생존자

발의안 제35호에 찬성 투표하시면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률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F" 등급을 받았습니다. FBI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등 캘리포니아주 도시 세 곳을 아동청소년 성매매 고밀도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소년들이 처음 인신매매 당하는 나이는 평균 12세에서 14세 사이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다시 인신매매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숙제 걱정을 해야 할 나이입니다.

발의안 제35호는 인신매매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인신매매범의 성범죄자 등록을 의무화하며, 온라인을 통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모든 등록 성범죄자들이 자신의 인터넷 이용 정보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캘리포니아 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발의안 제35호는 인신매매자들에 대한 벌금액을 늘리고, 이러한 돈을 피해자 서비스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다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발의안 제35호에 대한 찬성론은 다음과 같이 폭넓은 연합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 KlaasKids Foundation과 Crime Victims United 같은 아동청소년 및 피해자 권익 옹호 단체
- 8만여 명의 일반 경찰관들을 대표하는 캘리포니아주 법집행기관
- 인신매매 생존자들

발의안 제35호에 찬성 투표하여 아동청소년의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를 막읍시다.

WITHELMA ORTIZ
인신매매 생존자
CARISSA PHELPS
인신매매 생존자
NANCY O' MALLEY
Alameda 카운티 지방 검사